

제9기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9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10.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토목·건축 시공, 건축계획 등 20개 분야 총 220인 이내

* 총 250인 이내로 구성될 계획이며, 모집분야 및 인원은 위원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위원임기 : '23. 1. 1 ~ '24. 12. 31 (2년, 연임 1회 가능)

다. 기본요건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념 및 건설계획 취지를 이해하고, 분야별 전문지식 및 다양한 현장경험이 있을 것

2. 주요 업무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 (심의), 현장점검 및 건설현장 사고조사 등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자문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6항에 따른 대안 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8항에 따른 대안 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제10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제10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5.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적용할 신기술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을 채택함에 있어, 발주부서(설계자)와 검토조직이 상호 협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
8.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10.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적용할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
11.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부의하는 사항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3.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행정기관 소속의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9. 기타 당해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와 관련법령에 의거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응모 방법

가. 원서접수 : '22. 10. 12.(수) ~ '22. 10. 31.(월)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원서는 미인정

나.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서식1: 엑셀양식]

* 응모원서 작성시 양식 엄수, 반드시 '별첨' 파일을 토대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 기술자문위원 응모자격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등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체 가능)

다. 제출방식 : 전자우편(happypcd@korea.kr) 제출(방문, 우편 등 불가)

※ 메일 제목 : 기술자문위원 접수(홍길동, OO분야)

각종 서류는 하나의 폴더(폴더명: 홍길동, OO분야)에 담아 압축하여 첨부

5. 유의 사항

가. 응모 시 본 공고의 첨부된 **응모원서***(서식1: 엑셀 파일)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양식을 사용하고, **증빙서류**는 스캔(PDF)하여 제반 신청 서류의 파일명 형식에 따라 메일로 신청

※ **파일명** : [서식1] 응모원서(홍길동, OO분야)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홍길동, OO분야)

증빙서류 예시: 재직증명서(홍길동, OO분야)

학위증명서(홍길동, OO분야) 등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접수된 원서는 매일 16시 이후에 확인할 예정이며, 보낸 메일의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함

6.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선정은 우리청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위촉되며, 그 결과는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할 계획임

나. 제출한 각종 서류(자료)는 자문위원 신청자 명부 작성 및 위원선정 용도로만 활용하고, 기타 어떠한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음

다. 선정된 위원은 비정기 자문(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설현장 정기점검 및 사고조사 등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담당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044-200-3211, 3212, 3214)